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30
----------	------

2016. 9. 5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8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6.9.5. 상정·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주택건축국장 정유승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음
- 이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7회 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○ 출자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관련법령
 - 법 령 : 지방공기업법
 - 조 례 :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주요사업

-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
 - 민선6기 6만호 공급 달성 및 주택재고의 10%까지 지속 공급
 - 건설형, 매입형, 임차형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
-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
 - 기존 고시원 및 모텔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추진
 - 민관협력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저렴주택 확보 등

○ 출자의 필요성

-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,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
- 따라서,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등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동의안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여 2016년 8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.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차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며, 출자·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.
 - 출자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재정규모 및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
- 서울주택도시공사 납입자본금은 공사설립 후 현재까지 총 5조 4천2백 억원이며, 이중 현금출자는 3조 6천6백억원, 현물출자는 1조 7천6백 억원임
 - 출자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과 저렴주택 공급,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17년 출자금은 2천2 백억원으로 전년 출자금대비 약 20% 증액된 수준임

- 2017년 사업별 국고지원금의 합계는 총 1,037억원 규모로, 국비 및 서울시 출자금의 비율은 약 3:7 규모로 집계됨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	2015년	2016년	2017년
합 계	국비	108,572	85,621	103,679
	출자	224,353	184,352	220,955
	계	332,925	269,973	324,634
공공원룸주택 매입·건설 공급	국비	15,750	12,600	18,900
	출자	37,500	21,600	54,000
	계	53,250	34,200	72,900
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(민선5기)	국비	10,270	-	-
	출자	135,204	62,771	30,519
	계	145,474	62,771	30,519
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(민선6기)	국비	15,727	5,521	2,279
	출자	2,087	8,113	12,706
	계	17,814	13,634	14,985
기존주택 매입임대·다가구 주택	국비	66,825	67,500	82,500
	출자	49,562	82,500	82,500
	계	116,387	150,000	165,000
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	국비	-	-	-
	출자	-	4,300	24,300
	계	-	4,300	24,300
토지임대부 사회주택	국비	-	-	-
	출자	-	5,068	16,930
	계	-	5,068	16,930

자료 : 서울시 주택건축국

- 특히 민선 6기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국비지원금은 서울시 출자금 대비 15%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 출자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-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최초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해오고 있으며,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주택재고의 5% 수준인 약 17만4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, 9만여호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.
-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집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자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출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 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3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관련법령
 - 법령 : 지방공기업법
 - 조례 :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
 - 민선6기 6만호 공급 달성 및 주택재고의 10%까지 지속 공급
 - 건설형, 매입형, 임차형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

-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
 - 기존 고시원 및 모텔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추진
 - 민관협력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저렴주택 확보 등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,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
- 따라서,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등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박은영(☎2133 - 7044)